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449 |
|----------|-----|

2023년 2월 2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2월 2일, 이영실 의원 외 18명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9일  
다. 상정일자: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2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영실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유아 시기부터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교육의 정의에 어린이집을 명확히 명시하여 영유아기부터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환경교육’ 및 ‘학교 등’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1조2 신설).
- 정의 규정 신설에 따른 일부 조항 수정.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본문 및 별지서식 인용조문 수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나.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피재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활성화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학교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일부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④ (생략)

[제목개정 2022. 6. 10.]

### 1) 상위법 개정 동향

- 「환경교육활성화법」은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개정(시행일 '22.1.6)한 것으로, 환경교육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환경교육활성화법」 개정 논의 당시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입학 가능 나이가 일부 겹치고(만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담당 역할 등이 유사하여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유치원 원아는 학교환경교육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은 사회 환경교육대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양적·질적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교환경교육 지원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동 법을 개정(일부개정 '22.6.10)한 바 있음.

## 2) 검토의견

- 안 제1조의2는 “환경교육”을 상위법과 같게 정의하고, “학교 등”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임.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9조제5항은 상위법령의 제목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활성화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3조제2항과 제6조 및 제9조제1항 등은 학교환경교육 지원 대상기관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또한 동 조례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정책과는 현재 「환경교육활성화법」 제2조의3(사회환경교육)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7조(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등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2022년에는 에너지수호천사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132개소의 4,036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 6,854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의 제목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 “(서울특별시환경교육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4항”을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서울특별시환경교육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학교”를 “학교 등의 환경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을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조의2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학교환경교육”을 “학교 등의 환경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8호) 중 “학교환경교육”을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으로 한다.

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학교”를 각각 “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따른 세부”를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lt;신 설&gt;</p>   | <p><u>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p> <p>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p> <p>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p> <p>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
| <p>제3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u>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 <p>제3조(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u>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6조제1항-----<br/>----- <u>서울특별시 환경교육 계획</u>-----<br/>-----.</p>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등 활성화 방안

4. ~ 7.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자치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환경교육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생략)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학교 등의 환경교육 -----  
-----

4. ~ 7. (현행과 같음)

③ -----  
-----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  
----- . 이 경우 제1조의2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 7. (생략)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생략)

③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지역의 민간단체, 구청,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지원·조정

4. (생략)

④ (생략)

⑤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

2. 환경교육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삭제>

3. 학교 등의 환경교육 -----

4. ~ 6.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7. -----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 학교 등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학교 등 -----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

⑥ -----  
-----  
-----  
-----  
----- 따른 -----  
-----  
-----  
-----.